

# 가족친화인증사업

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.

## 가족친화인증제도



자녀출산 및 양육지원, 유연근무제도,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
(관련법률 :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)

### 인증주체

여성가족부장관

### 인증대상

기업 및 공공기관,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대학 등

### 신청대상

|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|--|
| 신규인증 (3년)    | 가족친화관련 법규준수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유효기간 연장 (2년) | 신규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(2018년 기준 '15년 신규인증 기업 및 기관)         |
| 재인증 (3년)     | 유효기간 연장의 유효기간 만료 전 (2018년 기준 '10, '13년 신규인증 기업 및 기관) |

### 인센티브

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또는 우선권 부여  
(조달청, 국방부, 중소기업청, 고용노동부, 지식경제부, 금융위원회, 신용보증기금 등)

### 인증방법

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(<http://www.ffsb.kr>) → 서류심사 → 현장심사 → 인증결과 통보

### 인증문의

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-6309-9048

